2025학년도 졸업사정 규정

이리동남초등학교

1. 목적

재학 중 기본 학습 습관 및 기본 생활 습관 실천에 모범을 보인 학생을 공정히 심사하여 시 상함으로써, 자주적 학습 성과에 대한 만족감과 성취동기를 높이고, 열린 사회 속에서 삶과 배움 을 함께 즐기며, 자기 주도적 학습 태도를 함양하여 자아실현에 힘쓰는 학생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준다.

2. 방침

- 가. 졸업예정자 중 적성과 특기를 스스로 기르며 인성이 바르고 교내외 교육 활동에 공헌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.
- 나. 졸업예정자는 순위 선정 기준에 의거하여 순위명부를 작성한다.
- 다. 장학금 대상자는 '졸업사정위원회'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.
- 라. 졸업사정위원회는 당해 학년도 교장, 교감, 교무, 6학년 담임교사로 한다.
- 마. 졸업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안에 학교폭력 및 교육활동 침해의 가해 관련 사안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및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되어 관련 조치를 받은 경우 졸업사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상, 장학금 대상자에서 제외한다.

3. 세부 시행 계획

- 가. 졸업예정자 순위명부 작성
 - 1) 순위 선정 기준: 교과성적(60), 행동발달(40), 가산점의 총점으로 하고 고득점 순서에 따라 순위명 부를 작성하고, 각 반의 공정성을 충분히 기한다.
 - 가) 교과성적 산출 기준
 - (1) 교과성적 중 형성평가 총점은 30점으로 한다. 당해연도 11월 말일까지 실시한 과목별 형성평가(국어, 수학, 영어) 결과의 과목별 합계 점수로 하며, 각 과목당 만점은 10점으로 하고 그 계산 방법은 '10/과목별로 실시한 형성평가의 횟수'로 한다.
 - (2) 각 과목별 형성평가의 평정은 상, 중, 하로 하며, (1)번에 의해 산출된 점수에 상 (*1.0), 중(*0.8), 하(*0.6)를 곱하여 계산한다.
 - ※ 교과 성적 산출 예시
 - ★ 국어과 형성평가를 5회 실시한 경우: '상'이 3개, '중'이 1개, '하'가 1개일 경우의 산출 예시
 - ➡ 배점 10(만점)/5(형성평가 횟수)=2(국어과 형성평가 1회당 기준 점수),
 - → 산출 점수: 상 3회: 2(기준점수)*3('상'을 받은 횟수)*1.0('상'에 배정된 점수)=6(산출된 점수),

중 1회: 2*1*0.8=1.6,

하 1회: 2*1*0.6=1.2 / 총 산출점수: 8.8점

형성평가 과목	국어	수학	영어
과목별 만점	10	10	10

(3) 교과성적 중 총괄평가 총점은 30점으로 한다. 1학기, 2학기 총괄평가(국어, 수학, 영어) 결과의 과목별 등급에 따른 배점은 다음과 같다.

총괄평가 과목		국어	수학	영어
1학기 배점	A등급	5	5	5
	B등급	4	4	4
	C등급	3	3	3
	D등급	2	2	2
2학기 배점	A등급	5	5	5
	B등급	4	4	4
	C등급	3	3	3
	D등급	2	2	2

나) 행동발달 산출 기준: 학교생활 전반(학교폭력 및 교육활동 침해의 가해 관련 사안, 미인정 결석, 지각, 학업태도 등)을 고려하여 평가하고, 사안이 있을 시 각 영역에 해당하는 점수만큼 감점한다. 단, '학업태도'는 교사의 평가를 기반으로 한다.

	정 량(30)			정성(10)			
	당해연도 학교폭력 및 교육활동 침해의 가해 관련 사안						
생활	생활지도위원 회 징계	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 및 지역교권보호 위원회에 회부	미인정 결석	미인정 지각	학업 태도	비고	
횟수	1회당	1회당	1회당	1회당	•	총점(40)에서 영역별 사안 에 따라 각 점수를 감한다.	
점수	-5	-10	-1	-0.5	10		

다) 가산점 산출 기준: 학교를 대표하여 각 대회에 출전하여 입상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가 산점을 부여한다.

대회 규모	시대회	도대회	전국대회	비고
가산점	+1	+2	+3	

2) 동점자 처리 기준: 동점자가 있을 시 소득수준(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, 차상위계층, 법정 한부모, 일반 순) 순으로 순위를 결정한다.

나. 시상

- 1) 학교장상: 졸업예정자 순위명부에서 '각 학급 1등'에게 수여한다.
- 2) 학교운영위원회장상: 졸업예정자 순위명부에서 '각 학급 2등'에게 수여한다.
- 3) 공로상: 졸업예정자 중 학교 발전에 큰 공로가 있는 '전교어린이 회장'과 '전교어린이 부회장'에게 수여한다.

다. 장학금

1) 지정장학금

- 가) 장학금 기탁자의 의도(법정 저소득층 등)에 따라 장학금 대상자를 선정한다.
- 나) 장학금 기탁자의 수여 목적에 따라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아 졸업사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2) 졸업장학금

- 가) 대상자는 졸업예정자 순위명부에서 법정 저소득층(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 급여, 차상위계층, 법정 한부모) 해당 학생을 우선 선정한다.
- 나) 졸업장학금 지급 방법
 - (1) 발전기금 중 졸업장학금으로 기탁받은 금액의 총액이 (6학년 학급수*10만원) 미만일 때에는 당해연도 6학년 학급수로 총액을 나누어 지급한다.
 - (2) 발전기금 중 졸업장학금으로 기탁받은 금액의 총액이 (6학년 학급수*10만원) 이상일 때에는 장학금 수여대상자 1인당 지급금액을 10만원으로 한정한다. 단, 학급당 균등히 배분되도록 한다.
 - (3) (1),(2)의 방법으로 장학금을 지급한 후, 남은 금액이 10만원 미만일 때는 남은 금액 전액을 6학년 졸업예정자 순위명부에 따른 차순위자(10만원 장학금을 받은 마지막 순위자의 바로 다음 순위자)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한다.
 - (4) 장학금은 수여대상자의 개인 계좌(또는 보호자)로 입금한다.
 - (5) 학생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지급할 수 있다.

부칙

- 1. 이 규정은 당해연도 졸업예정자에 한정하여 시행한다.
- 2. 이 규정의 수정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할 시는 졸업사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.